

대학원학칙 국제대학원 시행세칙

2004. 3. 1. 제정 2007. 3. 1. 개정
 2008. 3. 1. 개정 2008. 9. 1. 개정
 2009. 3. 1. 개정 2010. 9. 1. 개정
 2013. 9. 1. 개정 2015. 3. 1. 개정
 2016. 3. 1. 일부개정 2016. 9. 1. 일부개정
 2017. 9. 1. 일부개정 2018. 9. 1. 일부개정
 2019. 3. 1. 전부개정 2020. 3. 1. 일부개정
 2021. 3. 1. 일부개정
 2023. 6. 1. 일부개정
 <국제대학원 행정실>

-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 국제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교육목표) 이 대학원은 국제관계 및 세계 각 지역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육하여 한국의 국제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역량을 갖춘 국제전문가 및 지도급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 제3조 (교육과정) 석·박사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 제4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단, 산·학·연 협동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등 특별프로그램에 의한 석사과정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에 따로 정한다.
 ③ 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입학일로부터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박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입학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09.01.>
 ④ 재학연한을 경과한 자는 제적 처리하며, 재학연한이 경과된 수료생의 경우 영구수료로 처리한다. <항신설 2018.09.01.>
- 제5조 (수료를 위한 최소이수학점) ①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 39학점(학위청구논문작성을 할 경우) 또는 42학점(학위청구논문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박사과정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09.01.>
 ② 제1항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 (학기별 학점취득) 매 학기별 학점취득은 석사과정 16학점, 박사과정 1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1.09.01.>
- 제7조 (휴학기간) ①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통산 휴학 기간은 3학기로 한다.
 ② 군복무, 임신·출산, 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3.01.>
 ③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정한다. <항신설 2021.03.01.>
 ④ 임신·출산, 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최장 2년 이내로 한다. <항신설 2021.03.01.>
 ⑤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에 산입한다. 단, 대학원위원회에서 휴학 사유가 특별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1.03.01.>
 ⑥ 신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도 입학 후 첫 학기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3.01.>

제7조의 2(휴학 및 휴학의 제한) ① 휴학하려는 자는 학적변동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기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기 중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적변동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다.

⑥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창업 휴학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신청하고 창업 휴학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본 대학원 재적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학칙에 정한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해야 할 경우, 논문제출연한의 범위 내에서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연장하여 휴학할 수 있다.

<조선설 2021.03.01.>

제7조의 3(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하려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선설 2021.03.01.>

제8조 (수업) ① 수업은 주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② 정규학기 이외에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 중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절학기의 등록 및 수강은 등록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계절학기 수업의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재입학의 제한) ① 재입학은 전공 분야가 제적 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적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10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 석사과정생은 논문지도세미나 I 을 3학기에 수강하여야 한다. 단,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석사과정생의 경우에는 논문지도세미나 I 을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9.03.01.>

③ 학점교환협정이 체결된 국내 타교 대학원 또는 본교 일반대학원 개설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 담당 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이 대학원 행정실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03.01.>

④ 현지대학세미나 및 인턴십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대학원 행정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참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박사학위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최소 12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세미나 II 를 4학기에 수강하여야 한다.

제11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학점인정) ① 학점교환협정이 체결된 국내 타교 대학원과 본교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재학기간 통산 7학점까지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9.01.>

②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해외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제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20.03.01.>

- ③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입학 전에 취득한 타 대학원 성적을 입학 이후 이 대학원 성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석사 12학점, 박사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석사과정 신입생 공통과목 이수면제 시험) ① 다음 각 호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학부에서 B+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한 석사과정 신입생은 공통과목 이수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1. 국제학(국제통상·국제개발협력·국제평화안보·지역학)전공 : 공통과목(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정치) <개정 2023.06.01.>
- 2. 한국학전공 : 공통과목(한국근대사) <개정 2023.06.01.>

② 제1항의 이수면제 시험 신청은 입학 직전 1회에 한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석사과정 신입생 공통과목 이수면제 시험 응시 지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통과목 이수면제 시험 신청서
- 2. 공통과목 이수면제 신청과목 강의계획서
- 3. 전적대학 성적표

④ 석사과정 신입생 공통과목 이수면제 시험을 통과한 자는 이 대학원의 공통과목 중 최대 2과목(총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은 P(PASS)로 부여된다. <조 신설 2019.03.01.>

제14조 (전공신청 및 변경, 학위청구논문 작성 여부 선택)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 후 3학기 차에 학생의 희망,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전공 중 1개의 전공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위청구논문 작성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1.>

② 석사학위과정 4학기 차 수강신청시까지는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전공변경 신청서
- 2. 성적일람표

④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작성 여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학기 초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학원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항신설 2019.03.01.>

제15조 (지도교수) ①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 석사과정생 및 박사과정생은 3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3.01.>

②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석사과정생의 경우에도 3학기 초에 지도교수가 배정되며 해당 지도교수의 학업지도를 받아야 한다. <항신설 2019.03.01.>

③ 단, 대학원장이 허가할 경우 1학기 및 2학기에 지도교수를 신청할 수 있다. <항신설 2021.03.01.>

제16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한 지도 또는 학업지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1.>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자격시험의 시행) ①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외국어시험은 한국학전공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한국어를 시행하며, 박사과정 외국어시험은 총 2개 국어를 실시하며 영어는 필수로 시행하고 다른 1종은

제2외국어 중에서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3.06.01.>

③ 외국어시험은 각 외국어별로 대학원장이 2인 이상의 위원에게 출제를 의뢰하여 시행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한다.

④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은 구술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술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의 필기시험은 2과목의 범위에서 시행하며 국제학(국제통상·국제개발협력·국제평화안보·지역학)전공은 공통 1과목, 전공 1과목을 시행하고 한국학전공은 3분야 중 2분야를 선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06.01.>

⑥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은 공통영역으로 국제통상분야(국제통상전공자) 또는 국제협력분야(국제협력전공자)에 관한 기본 지식을 평가하고, 출제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전공영역은 수강한 박사학위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2과목을 평가한다. <개정 2023.06.01.>

⑦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과목별 부분합격을 인정한다.

제18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제2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 33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학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중 공통과목인 연구방법론, 논문지도세미나 I, 국제학(국제통상·국제개발협력·국제평화안보·지역학)전공의 경우에는 국제경영,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개발협력입문 중에서 3과목을 이수한 자, 한국학전공의 경우에는 한국근대사, 현대한국입문, 한국어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6.01.>

③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 27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학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3.01.>

제19조 (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자격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사과정 종합시험과 한국학전공의 경우에는 외국어시험(한국어)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6.01.>

1. 종합시험의 면제 대상은 3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2015학년도 9월 입학자를 포함한 이전 입학자 : 40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학년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자 중 공통과목인 연구방법론, 논문지도세미나 I, 국제학(국제통상·국제개발협력·국제평화안보·지역학)전공의 경우에는 국제경영,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개발협력입문 중에서 3과목을 이수한 자, 한국학전공의 경우에는 한국근대사, 현대한국입문, 한국어 과목을 이수한 자 <개정 2023.06.01.>

나. 2016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2018학년도 3월 입학자 : 33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학년 평균평점이 3.75 이상인 자 중 공통과목인 연구방법론, 논문지도세미나 I, 국제학(국제통상·국제개발협력·국제평화안보·지역학)전공의 경우에는 국제경영,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개발협력입문 중에서 3과목을 이수한 자, 한국학전공의 경우에는 한국근대사, 현대한국입문, 한국어 과목을 이수한 자 <개정 2023.06.01.>

다. 2018학년도 9월 입학자를 포함한 이후 입학자 : 33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학년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중 공통과목인 연구방법론, 논문지도세미나 I, 국제학(국제통상·국제개발협력·국제평화안보·지역학)전공의 경우에는 국제경영,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개발협력입문 중에서 3과목을 이수한 자, 한국학전공의 경우에는 한국근대사, 현대한국입문, 한국어 과목을 이수한 자 <개정 2023.06.01.>

2. 외국어시험(한국어)의 면제 대상 : 한국어고급 과목 또는 그 이상의 과목(한국어강독, 한국어고급강독)을 수강하여 A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개정 2023.06.01.>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박사과정 외국어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01.>
1. 영어시험
 - 가. 영어성적 TOEFL 237(CBT)이상 취득한 자(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 나. 외국대학(원) 또는 국내 국제대학원에서 모든 강좌를 영어로 수강하여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개정 2023.06.01.>
 2. 제2외국어시험
 - 가.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 에서 B 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나.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 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어 이외의 외국어 어학능력시험에서 중급 이상을 취득한 자
- 제21조 (자격시험 재응시) ①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 ②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은 3회까지로 제한한다.
- 제22조 (석사과정 연구계획서 발표) ① 석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3학기 차의 지정된 발표일에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발표확인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 ② 단, 3학기 차에 발표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직전 학기로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 제23조 (박사과정 연구계획서 심사) ①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계획서를 심사한다.
- ② 심사의 최종판정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4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입학년도로부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박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입학년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은 기간은 제2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복무)
 2. 임신·출산, 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 <개정 2021.03.01.>
 3. 장기해외체류
 4. 공직연수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지연을 초래한 기타의 사유로 수료자가 논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25조 (학위청구 자격) ①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지도교수로부터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 ②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석사과정생 중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위청구의 자격을 부여한다. <항신설 2018.09.01.>
- 제25조의 2 (재학연한 초과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①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재학연한)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② 박사과정의 경우 연장이 허가된 자는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생의 외국어 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박사과정의 경우 연장이 허가된 자가 허가일 기준 5년 이내의 기간에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등재지(KCI) 이상 수준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연장이 허가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청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진입한 첫 학기는 재입학금이 부과된다.

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및 허가는 1회에 한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한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조선철 2021.03.01.>

제2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위원장에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심사료와 함께 논문심사 신청서류를 이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②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5월 10일, 후기는 11월 10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① 석사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3명 이상, 박사학위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 (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논문 내용의 타당성, 적격성 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석사학위는 심사위원 2/3 이상, 박사학위는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수정 및 보완 후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학위수여 심의) 학위수여는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 (장학금) ① 석사학위과정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은 직전 학기에 외국어를 제외한 전공 9학점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은 학생의 직전 학기 성적 및 가정환경, 프로그램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매 학기마다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 인원을 정한다.

제32조 (공개강좌) ① 이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별지서식 1]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 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3조 (연구생) ① 이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이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34조 (연구기간 및 연구과제)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제35조 (수료연구생 및 수료생) ① 수료연구생은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료연구지도”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8.09.01.>

② 수료생은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수료연구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8.09.01.>

③ 수료연구생 제도는 내국인 박사와 외국인 박사, 석사에게 적용한다. <항신설 2018.09.01.>

④ 외국인 박사 및 석사 수료생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료연구생 등록을 하여 수료연구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8.09.01.>

⑤ 내국인 박사 수료연구생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의 수료연구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항신설 2018.09.01.>

제36조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①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그 밖에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학·석사연계과정) ① 본교 학부를 졸업하는 학생이 국제대학원으로 진학할 경우 6개월을 단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학·석사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23.06.01.>

② 평균평점 3.5 이상 및 등록 4학기 이상으로 합격 다음 학기부터 최소 2학기 이상 잔여학기가 있는 학생은 국제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6.01.>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이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이 대학원 과목을 선수강으로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이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이 대학원장이 정하는 전공교과목 시험을 통하여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38조 (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 ①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란 인권과 성평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③ “연구윤리교육”이란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④ 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20.03.01.>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제7조 제3항,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2항은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7조 제4항 내지 제5항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9조 제4항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제7조, 제13조, 제18조, 제20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7조 제6항, 제20조 제1항 개정, 제23조 신설 및 이하 조번호 변경)
2. (경과조치) ①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시험 면제 기준 변경은 2013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 제6항의 박사과정 자격시험 변경 및 제23조의 박사과정 연구계획서 심사는 2013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조, 제16조 개정,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신설, 제4조, 제8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35조 조번호 변경)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1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2. (경과조치) 제4조 제3항을 제외한 개정사항은 2016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4조 제1항 개정)
2.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 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8조 변경, 제34조 신설 및 이하 조번호 변경, 제35조 조번호 변경 및 제1항 내지 제2항 개정 및 제3항 내지 제4항

삭제)

2. (경과조치) 제34조의 박사 수료연구생 제도는 2017년 3월 1일부터 1년간 기존 수료생 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제3항 개정 및 항 신설, 제5조 제1항 개정, 제14조 개정 및 항 신설, 제16조 개정 및 항 신설, 제18조 개정, 제19조 제1항 개정, 제21조 제2항 개정, 제24조 개정 및 제34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가. (석사학위청구논문작성에 대한 적용례) ① 제5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2018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나. (석사과정 신입생 공통과목 이수면제 시험에 대한 적용례) 제13조는 2016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다.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적용례) 제18조는 2016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라. (자격시험의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나목은 2016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다목은 2018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항 내지 제2항 개정, 제38조 신설)
2. (적용대상) 제12조 제1항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개정, 제7조의 2 신설, 제7조의 3 신설, 제15조 제3항 신설, 제24조 제3항 제2호 개정, 제25조의 2 신설)
2. (경과조치) 제15조 제3항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개정, 제7조의 2 신설, 제7조의 3 신설, 제15조 제3항 신설, 제24조 제3항 제2호 개정, 제25조의 2 신설)
2. (경과조치) 제15조 제3항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제12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7조 개정)
2.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1] 공개강좌 이수증서

제 호

이 수 증 서

성 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국제대학원이 개설한 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고 려 대 학 교 국제대학원장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고 려 대 학 교 총 장 ○ ○ ○ (인)